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3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9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1.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13,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2. 15. 원고 B, C, D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11,600,280원(가산세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30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시 E 전 1,736㎡, F 전 1,415㎡, G 전 3,772㎡, H 전 2,182㎡, I 하천 698㎡, J 답 23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1965. 6. 18. K, 망 L(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K이 사망함에 따라 2012. 9. 4.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상속인은 2013. 5.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4. 12. 10. 원고 A에게 취득세 17,980,6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91,850원(가산세 포함), 농특세 1,041,110원(가산세 포함) 합계 19,713,600원을 경정·고지[1]하였고, 2014. 12. 15. 원고 B, C, D에게 각 취득세 10,496,560원, 지방교육세 427,850원, 농특세 675,870원 합계 11,60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및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12. 원고 A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56,434,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상속인인 원고들의 지분별 과세로 감액하는 등 조정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2. 12. 원고 A에게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할 당시 공동상속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한 근거 및 계산명세를 첨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 2. 12.자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2014. 12.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 적법한 취득세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30

8.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M 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9518)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의 진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소송수계절차를 거쳐 위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종중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9518), 2011. 8. 18. 종중의 실체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상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1843). 이에 종중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2. 13. 상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대법원 2012다64048),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27.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30

고등법원 2013나1091). 피상속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1091호 소송계속 중인 2013. 5.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종중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1091호 판결에 다시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4. 2. 21. 상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82838).

3)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25. 원고들은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15127),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30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인 2013. 5.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3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30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